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같은 법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영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시송달 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자 (법인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
일반음식점 (2009-00666815)	웰빙푸드	이*열	증가로 26, 1층(연희동)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소 폐쇄	2023. 9. 8.

2. 공고기간 : 2023. 9. 15. ~ 2023. 10. 5.

3. 고지사항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담당자 신서현, ☎02-330-3829)